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면허 자에 대한 자동차대여를 사전에 차단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임대할 때에는 운전자격확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558호, 2021. 12. 7. 공포, 2023. 6. 8.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면허 진위성(위·변조) 및 유효성(면허정지·취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2022. 7. ~ 8.)

대통령령 제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권한의 위탁) ① ~ ② (생략)	제38조(권한의 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③ -----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u>9의2.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u>
10. (생략)	10.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819